**주식회사 화인자산운용 정보기술(IT) 부문 공시**

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 및 『금융IT 보호업무 모범규준』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.

1. 공시사유

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부문 및 정보보호인력비율 미충족과 모범규준상의 금융 ISAC 연계시기 미충족

2.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 | 정보보호 인력비율 | 정보보호 예산비율 |
| 총 임직원수의 5%이상(0명) | 정보기술부문인력의 5%이상(0명) | 정보기술부문예산의 7%이상(3.5백만원) |

3.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예산비율 (공시일 현재기준)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 | 정보보호 인력비율 | 정보보호 예산비율 |
| 미충족 | 미충족 | 충족 |
| 0% (0명) | 0% (0명) | 20% (10.1백만원) |

4.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

□ 당사는 대고객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제공하지 않으며, 소규모 기업임.

5.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

□ 당사는 법인대상으로 영업을 수행 중으로 개인고객이 없음에 따라 영향 없음.

6. 금융 ISAC(공동보안시스템) 연계여부

□ 당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ISAC를 연계하지 않고 있음

2022. 01. 31

주식회사 화인자산운용 대표이사 정민철 (인)